

석좌교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가천대학교 석좌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적 공헌이 현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탁월하며 업적이 인정된 국내외 인사로 한다. 다만, 본교에서 전임교원을 역임한 교원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직 중에 공적이 탁월한 교원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2.27.)

제3조(종류) ①석좌교수는 다음의 두 종류로 구분한다.

1. 본교에서 초빙한 초빙석좌교수
2. 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출연석좌교수

②출연석좌교수의 경우에는 그 앞에 출연자의 명의를 붙일 수 있다.

제4조(임용절차) ①석좌교수는 다음 각호의 절차를 거쳐 임용한다. (개정 2015.06.16.)

1. 각 대학(원)장 추천
2. 총장의 제청 (개정 2015.06.16.)
3. 이사장이 임용 (개정 2015.06.16.)

② (삭제 2015.06.16.)

제5조(임용기간) 석좌교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05.31., 2015.06.16., 2019.02.21.)

제6조(임무) 석좌교수는 임기 중 연구활동을 수행하거나 또는 본교가 지정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필요할 때는 특강을 한다.

제7조(보수) ①초빙석좌교수의 급여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상여금 및 제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정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해 기금이 확보된 출연석좌교수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2-7~2 제3편 행 정

다.

제8조(기타)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